거창군
Geochang County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776호 2020. 11. 11.(수)

거창 행복 거창

선결	기관의 장

고 시

제2020-123호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・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… 2
제2020-125호 도로명주소 고시 …… 10
제2020-126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거창군관리계획(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 …… 12

공 고

제2020-1406호 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…… 18
제2020-1408호 거창군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공고 …… 24
제2020-1414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궤도,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…… 25
제2020-1416호 거창군계획시설(문화시설:문화산업단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…… 29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http://www.geochang.go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20-123호

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지정·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거창군 고시 제2008-51호(2008.10.22.)로 지정되고, 거창군 고시 제2010-22호(2010.05.04)로 지정(변경)·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, 제2011-108호(2011.12.23), 제2012-72호(2012.06.29), 제2012-118호(2012.10.30)로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, 제2018-21호(2018.02.14.), 제2019-48호(2019.05.15.), 제2020-6호(2020.01.14.)로 지정·실시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'거창 석강제2농공단지'에 대하여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8조 및 같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,

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사항 등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(☎055-940-3362)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20. 11. .

거 창 군 수

1. 농공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 없음)

○ 명 칭 :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(일반)

○ 위 치 :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1420번지 일원

○ 면 적 : 42,353.6㎡

2. 농공단지의 지정목적(변경 없음)

○ 지역산업의 육성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3.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 없음)

○ 거창군수

4.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
○ 개발기간(변경)

- 기정 : 2008년 ~ 2013년
- 변경 : 2008년 ~ 2021년 06월 30일

○ 개발방법 : 공영개발(거창군)(변경없음)

5. 주요 유치업종(변경)

○ 기정 : C10. 식료품제조업, C11. 음료제조업, C24. 1차 금속제조업, C25. 금속가공제품제조업

○ 변경 : C10. 식료품제조업, C11. 음료제조업, C24. 1차 금속제조업, C25. 금속가공제품제조업, 태양력 발전업(D35114)

6. 유치업종의 배치계획(변경)

○ 기정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34,488.9	-	34,488.9	100.0	
식료품제조업(C10) 음료제조업(C11) 1차 금속제조업(C24) 금속가공제품제조업(C25)	34,488.9	-	34,488.9	100.0	

○ 변경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34,488.9	-	34,488.9	100.0	
식료품제조업(C10) 음료제조업(C11) 1차 금속제조업(C24) 금속가공제품제조업(C25)	34,488.9	-	34,488.9	100.0	

※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「전기사업법」에의거 단지내 건물지붕을 활용하여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가능 : 태양력 발전업(D35114)

7.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
○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	42,353.6	-	42,353.6	100.0	
산업시설용지	34,488.9	-	34,488.9	81.4	
공공시설용지	7,864.7	-	7,864.7	18.6	
도 로	2,866.6	감)105.0	2,761.6	6.6	
배 수 지	308.1	증)220.0	528.1	1.2	
수질오염방지시설	41.4	-	41.4	0.1	
주 차 장	129.9	증)89.0	218.9	0.5	
구 거	309.4	-	309.4	0.7	
녹 지	4,209.3	감)204.0	4,005.3	9.5	

○ 주요기반시설계획(변경)

1) 도로(변경)

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67	4~10	집산도로	790 (285)	가조석장 1413	가조석장 1426	일반도로	-	거고22호 ('10.5.6)	
변경	소로	1	67	4~10	집산도로	785 (280)	가조석장 1413	가조석장 1426	일반도로	-		

※ ( )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

2)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주차장	가조면 석강리 1428	129.9	증)89.0	218.9	거고22호 ('10.5.6)	

3)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녹지	완충녹지	가조면 석강리 1429 일원	4,209.3	감)204.0	4,005.3	거고22호 ('10.5.6)	

4)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-	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가조면 석강리 1426	308.1	-	308.1	거고22호 ('10.5.6)	
신설	-	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가조면 석강리 1429	-	증)220.0	220.0		

5) 하수도 계획(변경없음)

8.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(변경)

가.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

○ 단지내도로

- 기정 : 285m(폭 4~10m), 배수지 1기, 비점오염원처리시설 1개소
- 변경 : 280m(폭 4~10m), 배수지 1기, 비점오염원처리시설 1개소

나. 오수처리장 현황(비점오염원처리시설,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연결)

○ 부지면적 : 41.4㎡

○ 규 모 : 3,835㎥/일

○ 사 업 비 : 41백만원

○ 처리방법 : 여과형 시설

다. 용수공급 및 배수장 현황

○ 부지면적 : 308.1㎡

○ 배수지용량

- 기정 : 300㎥
- 변경 : 500㎥

○ 사 업 비

- 기정 : 123백만원
- 변경 : 290백만원

○ 용수공급

- 기정 : 지방상수도 연결(공업용수 699.4㎥/일, 생활용수 14.2㎥/일)
- 변경 : 지방상수도 연결(공업용수 948㎥/일, 생활용수 52㎥/일)

9. 수용·사용할 토지·건축물,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(변경 없음)

10.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없음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-	석강제2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(산업유통형)	가조면 석강리 1420 일원	42,353.6	-	42,353.6	거고22호 ('10.05.06)

나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1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) 교통시설

□ 도 로

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소로	1	67	4~ 10	집산 도로	790 (285)	가조석강 1413	가조석강 1426	일반 도로	-	거고22호 ('10.5.6)	
변경	소로	1	67	4~ 10	집산 도로	785 (280)	가조석강 1413	가조석강 1426	일반 도로	-		

※ ( )안은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

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소로1-67	소로1-67	• 연장축소 - 790㎡ → 785㎡(감 5m)	• 도로 일부구간을 주차장으로 변경함에 따른 연장 축소

□ 주차장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주차장	가조면 석강리 1428	129.9	증)89.0	218.9	거고22호 ('10.5.6)	

-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주차장	• 면적 변경 - 129.9㎡ → 218.9㎡ (증 89.0㎡)	• 배수지 신설 등에 따른 면적 변경

□ 녹 지

○ 녹지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-	녹지	완충녹지	가조면 석강리 1429 일원	4,209.3	감)204.0	4,005.3	거고22호 ('10.5.6)	

- 녹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녹 지	• 면적 변경 - 4,209.3㎡ → 4,005.3㎡ (감 204.0㎡)	• 배수지 증설 및 주차장 변경 등에 따른 면적 감소

□ 수도공급설비

○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-	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가조면 석강리 1426	308.1	-	308.1	거고22호 ('10.5.6)	
신설	-	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가조면 석강리 1429	-	증)220.0	220.0		

-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-	수도공급설비 (배수지)	• 배수지 신설 - A=220.0㎡	•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

2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획 지			비고
			번 호	위 치	면적(㎡)	
합 계		34,488.9	-	-	34,488.9	-
-	A1	16,984.0	1	가조면 석강리 1420	6,103.3	
			2	가조면 석강리 1421	5,605.7	
			3	가조면 석강리 1422	5,275.0	
-	A2	17,504.9	1	가조면 석강리 1430	5,487.3	
			2	가조면 석강리 1431	5,529.0	
			3	가조면 석강리 1432	6,488.6	

3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건축선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구 분	계 획 내 용
-	A1 A2	용 도	• 허용용도 -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 • 불허용도 - 허용용도 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60%이하
		용적률	• 150%이하
		높 이	• 4층 이하

11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○ 관련도서는 거창군청 미래전략과(055-940-3362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.(관련도서 게재생략). 끝.

거창군 고시 제2020 - 125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11. 11.

거창군수

○ 부여한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191-7 등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(부여.변경.폐지) 고시 조서

일련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둔동리 1469-2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191-7	20090702	20201111	행정구역명(수동면+남상면) 활용	부여
2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44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황마로 1004-25	20090702	20201111	옛 노선명(황곡+마리면간) 활용	부여
3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598	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고들고개길 131-46	20090401	20201111	고들고개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	부여
4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궁항리 1963-2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매학길 81-138	20090401	20201111	매화나무와 학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부여
5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578-3, 1577-1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삼포길 99	20090401	20201111	삼포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	부여
6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553, 1553-1, 1553-2, 1553-3, 1553-4, 1553-5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새작길 299	20091228	20201111	새작골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	부여
7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2-9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31	20160420	20201111	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	부여
8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94-1, 94-2	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용문들길 144-20	20180502	20201111	북상면 농산리 대표적인 들인 용문들 명칭 반영	부여

거창군 고시 제 2020 - 126호
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거창군관리계획(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 지형도면 정정고시

「주택법」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「주택법」제15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주택법」제19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6일

거 창 군 수

1.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1) 사 업 명 :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(가지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)

2) 사업주체

가. 상 호 : 주식회사 금호주택

나. 대표자 : 유한성

다. 영업소재지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, 504호(아진캐슬상가)

3)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·규모

가. 위 치 :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

나. 대지면적 : 22,630㎡

다. 연 면 적 : 72,825.0908㎡

라. 규　　모 : 아파트 7동(469세대), 근린생활시설, 관리사무실, 경로당, 경비실, 어린이집, 주민편의시설

마. 형　　별 : 59A형(전용면적 59.966㎡), 84A형(전용면적 84.9031㎡) 84B형(전용면적 84.9710㎡), 84C형(전용면적 84.9436㎡) 109A형(전용면적 109.9683㎡)

4) 의제사항 :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법률 일체

5) 사업시행기간 : 2020년 11월 ~ 2023년 7월

2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

1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

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: 붙임

3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

4) 「산지관리법」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

[붙 임]

Ⅰ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

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27	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-	증)24,342	24,342	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변 경 내 용	결 정 사 유
27	가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	○ 신설 24,342㎡	• 가지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,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·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

2.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-	증) 24,342	24,342	100.0	
공동주택용지	-	증) 22,630	22,630	93.0	
도로용지	-	증) 1,712	1,712	7.0	

2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용 도 지 역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총 계		24,342	-	24,342	100.0	
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24,342	감)22,630	1,712	7.0	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22,630	22,630	93.0	
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3종일반주거지역	22,630	250% 이하	•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적정수준의 개발밀도를 확보하고, 주변지역 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종 변경

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1. 도로

○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1	76	10	국지도로	168	중로 3-1	가지읍 1325-2	일반도로	-	-	

○ 도로 결정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 1-76호선	· 노선신설 (B=10m, L=168m)	• 가지지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원활한 진·출입을 위해 진입도로 신설

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
I	1	22,630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22,630	공동주택용지
I	2	1,712	거창읍 가지리 1325-2번지 일원	1,712	도로용지

5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번호 (가구번호)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
I -1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용 도	• 지정용도 :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, 복리시설 • 불허용도 :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• 60% 이하
		용적률	• 250% 이하
		높 이	• 27층 이하
		배 치	• 시각적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• 가구의 형상을 감안하여, 각 동의 배치방향이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
		형 태	• 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,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 •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,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 •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
		색 채	• 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의 색채 개념을 도입하여 계획

6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

도면 번호	위치	계획내용	비고
-	거창읍 가지리 1323-9번지 일원	• 소로1-76호선 및 대상지 북동변 차량출입 허용구간 설정 • 차량출입 허용구간 외 차량출입 불허	차량출입 허용구간 도면참조

※ 군 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고시 관련도면 : 게재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 끝.

거창군 공고 제2020-1406호

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,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1월 4일

거 창 군 수

1. **자치법규명** : 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

2. **개정이유** : 「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조례」 전부개정(2018.10.31.)으로 국 신설 등 행정기구 설치·개편에 따라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함

3. **주요내용**

가. 군수 권한대행·직무대리 개정함 : (안)제2조
1) 현행 : 군수→부군수→직제순서에 따른 실·과장
2) 개정 : 군수→부군수→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
나. 직무대리 체계를 정비함 : (안)제3조
1) 국장
(가) 신설 : 국장→직제순서에 따른 과장
2) 읍·면장
(가) (현행) 읍·면장→직제순서에 따른 담당주사
(나) (개정)
(1) 읍장→부읍장→직제순서에 따른 과장, 과장→직제순서에 따른 담당주사
(2) 면장→부면장→직제순서에 따른 담당주사

4. **소요예산** : 해당없음

5. **의견제출**

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행정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다. 주소 : (우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(행정과)

라. 전화 055-940-3172, 팩스 055-940-3179, 이메일 hyungoing@korea.kr

붙임 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 전부개정규칙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□ 조 례 명 : 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　고

거창군 조례 제　　호

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권한대행 등) 「지방자치법」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**대리**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.

제3조(법정대리) 보조기관 등이 결원이나 출장·휴가 등 일시적 사유(이하 "사고"라 한다)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(이하 "대리"라 한다)한다.

1.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**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**
2.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**해당 담당관 또는 과**의 직제 순서에 따른담당주사
3.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. 다만,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.
4. **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, 부읍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,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**
5. **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면장, 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면의 직제 순서에 따른 담당주사**

제4조(지정대리)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

② 담당주사(소속 공무원 포함)가 사고가 있으면 **해당 담당관, 과·소장** 및 읍·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.

제5조(대리의 특례) 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19. 12. 25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, 타법개정]

제111조(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부단체장"이라 한다)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
1. 궐위된 경우
2.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
3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지사나 부시장이 2명 이상인 시ㆍ도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[시행 2019. 7. 1.] [대통령령 제29609호, 2019. 3. 12., 일부개정]

제74조(권한대행 및 직무대리) ①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(이하 이 조에서 "부단체장"이라 한다)은 법령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할 범위와 기간을 미리 서면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. 다만, 공익상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임되거나 지시된 사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
④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되거나 권한대행을 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고,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⑤ 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ㆍ부지사 3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(1)부시장ㆍ행정(1)부지사, 행정(2)부시장ㆍ행정(2)부지사,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,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, 정무부시장ㆍ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. <개정 2010. 11. 2.>

거창군 공고 제 2020-1408호

거창군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·공고

「건축법 시행령」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거창군건축위원회 심의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·공고 합니다.

2020년 11월 6일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건축위원회 심의지역

가. 심의지역 : 거창군 전 지역

나. 지정기간 : 2020. 11. 6. ~ 지정해제일 전일까지

거창군 공고 제2020-1414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궤도,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・공고

『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』과 관련한 사업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궤도,주차장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6.

거 창 군 수

1. **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** :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-31번지 일원
2. **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**
   가) 종 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궤도, 주차장)사업
   나) 명 칭 : 궤 도 -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
   주차장 -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
3. **사업규모(변경)**

종류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시 행 규 모(㎡)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
군 계획시설	교통시설	궤도	고제면 개명리 신19-12번지	27,870.0	13,953.0	거창군 고시 제2017-105호 (2017.8.24.)	
		주차장	고제면 개명리 산19-14번지	7,801.0	7,801.0	거창군 고시 제2017-105호 (2017.8.24.)	
				7,939.0	7,939.0		

4. **사업 시행자**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(산림과장)

5. 사업기간(변경)

○ 당초 : 2018. 10. 25. ~ 2019. 03. 31.

○ 변경 : 2018. 10. 25. ~ 2021. 12. 31.

6. **열람기간**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7. **열람장소**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☏055-940-3583)

8. **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** : 게재생략 (열람장소 비치)

9. **의견제출 및 열람** :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(서식)
❍ 실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❍ 성 명 :
❍ 연락처 :
❍ 기타 참고사항.

❒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❍ 궤도

일련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45,505	13,953					
				47,376	13,953					
1	고제면 개명리	2051-13	주	7,964	3,475		거창군			
		2051-13	주	7,964	3,475		거창군			
2	고제면 개명리	2051-14	잡	1,944	492		거창군			
		2051-14	잡	1,944	492		거창군			
3	고제면 개명리	산22-29	임	13,822	486	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68	강삼석	근저당권 지상권	거창군산림조합	
		산22-29	임	13,822	486	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2068	강삼석	근저당권 지상권	거창군산림조합	
4	고제면 개명리	산19-12	임	10,762	4,559	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-1	황윤구			
		산19-12	임	4,110	28		거창군			
		산19-31	임	4,559	4,531		거창군			
5	고제면 개명리	산19-14	도	16,551	4,941		국토교통부			
		산19-14	도	13,316	3,280		거창군			
		2036-6	잡	1,551	1,551		기획재정부			
		2036-5	잡	110	110		기획재정부			

❍ 주차장

일련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30,065	7,801					
				19,302	7,939					
1	고제면 개명리	산19-14	도	16,551	3,492		국토교통부			
		산19-14	도	13,316	1,953		국토교통부			
		2036-4	차	1,226	1,226		기획재정부			
		2036-3	차	370	370		기획재정부			
2	고제면 개명리	2036	도	675	675		국토교통부			
		2036	차	326	326		기획재정부			
		2036-2	도	349	349		국토교통부			
3	고제면 개명리	산19-20	임	2,461	2,461		거창군			
		산19-20	임	2,461	2,461		거창군			
4	고제면 개명리	2036-1	전	535	535		거창군			
		2036-1	전	535	535		거창군			
5	고제면 개명리	산19-23	임	120	120		거창군			
		산19-23	임	120	120		거창군			
6	고제면 개명리	산19-21	임	9,616	78	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산19-1	황윤구			
		산19-27	임	72	72		거창군			
		산19-28	임	28	28		거창군			
7	고제면 개명리	2037-3	전	79	79		거창군			
		2037-3	전	79	79		거창군			
8	고제면 개명리	산19-29	임	420	361		거창군			
		산19-29	임	420	420		거창군			

거창군 공고 제2020-1416호

거창군계획시설(문화시설:문화산업단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

『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』 추진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문화시설:문화산업단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0. 11. 6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시행 개요

종 류	명 칭	위 치	시행규모(㎡)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결정면적	금회시행		
군계획시설 (문화시설)	복합문화단지 주차장 확장사업	거창읍 장팔리 9번지 일원	18,348.0	5,868.0	경고제317호 (1999.12.15.)	

2.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○ 성 명 : 거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
○ 명 칭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

4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
5. 열람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
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참조

7. **의견제출 및 열람** :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·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견 서 (제출서식)

○ 실시계획(안)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

-

-

○ 성　　명 :

○ 연 락 처 :

○ 기타 참고사항.

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일련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성명	권리명	권리자	
합계	-	-	-	19,586	5,868					
1	거창읍 장팔리	9	전	1,015	1,015		거창군			
2	거창읍 장팔리	9-2	전	1,722	1,722	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62번길 12, 105동 503호 (녹양동,힐스테이트)	박문영			
3	거창읍 장팔리	9-4	전	119	119	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72	이남근			
4	거창읍 장팔리	9-5	전	360	360		거창군			
5	거창읍 장팔리	9-6	전	96	96	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355	신의정			
6	거창읍 장팔리	9-7	전	112	112	김천동	박봉수			
7	거창읍 장팔리	9-8	전	440	440	김천동	박봉수			
8	거창읍 장팔리	9-9	전	810	810	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내당길 100-14	유영미			
9	거창읍 장팔리	213-1	전	674	674	거창군 거창읍 김천동 246	정차수			
10	거창읍 장팔리	산367	구	37	37		농림수산부			
11	거창읍 장팔리	1460	구	1,193	237		농수산부			
12	거창읍 장팔리	7	대	13,008	246		거창군			